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8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 박충권·최은석·김성원

고동진 · 김선교 · 유상범

최수진 • 서지영 • 김상훈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 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,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	제13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
선 제공) 국가 또는 지방자치	선 제공)
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	
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	
한다. 다만, 예산부족이나 아이	
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	
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
	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
	<u>주민의 자녀</u>
7. · 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